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34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서천호 · 조은희 · 우재준
김은혜 · 김용태 · 엄태영
정성국 · 나경원 · 이만희
김민전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용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현재 농업·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속적인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지원 혜택이 기한 만료로 축소된다면 농촌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인 보호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

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
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
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략)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
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2. (생략)

⑧ ~ ⑩ (생략)

-----.

-----.

③ -----

-----203
1년 12월 31일-----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2031년 12월 31일-----

-----.

1. 2.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제68조(동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2031년 12월 3
1일-----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② (현행과 같음)

③ -----
-----2031년 12월 31일-----

[illegible]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생 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
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
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
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
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
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
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 략)

②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2031년 12월 31일-----

-----.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생략)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u>2026년 1월 31일까지</u>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4. (생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략)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2. (생략) ⑪ (생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u>2031년 1월 31일</u>----- ----- 4.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u>2031년 12월 31일</u>----- -----. 1. 2.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	---